



가정법

변호사 : 신혜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문 부친 유서에 외아들인 내가 상속인으로 지명되지 않았다는데

〈문〉 얼마전 부친 상을 당했습니다. 저와 아버지는 캘리포니아 주 거주인입니다. 저의 부모님은 제가 10살 때 이혼을 하셨고 아버지는 바로 재혼을 하셨습니다. 저는 아버지와 인연을 끊고 살다가 제가 결혼한 이래로 가끔씩 왕래를 유지하며 지내왔습니다. 아버지께서 재혼 하셨던 새어머니는 2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가 10년 전에 작성한 유서에 의하면 전 재산이 어느 사회 단체에 상속되는 것으로 되어있고 제 이름이 상속인으로 지명이 안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아버지의 유일한 혈연인데 저의 상속 권리는 어떻게 되는지요.

〈답〉 귀하께서 부친의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서는, 캘리포니아 주 유산 상속법 제 21102조에 의거, 부친이 유서를 작성했을 당시, 귀하가 부친보다 먼저 사망한 것으로 부친이 잘못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법원을 통해 증명하셔야만 합니다. (Omitted Child 혹은 Pretermitted Heir) 법원은 개인이 유서

를 남겼을 경우, 개인의 유서의 내용에 입각하여 개인의 뜻이 그의 재산 분배에 있어 최대한으로 반영되는 것을 원칙으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의 직계 자손이 개인의 상속인으로 지명되지 않았을 경우, 개인이 의도적으로 그 특정 자손에게 상속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유서의 내용에 이의를 제기하는 자가 유서의 내용을 번복하여 상속하기에 충분한 근거를 법이 요구하는 절차와 내용에 따라 증명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부친이 유서를 작성했을 당시, 귀하와 왕래가 있었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부친이 귀하의 생사 여부를 실수로 잘못 알고 있었을 확률은 거의 없으리라 사료됩니다. 따라서, 부친이 귀하의 존재와 그 생존 사실을 알면서도 부친의 재산을 사회 단체에 기증하려는 것이 상속의 의도이자 내용이므로 귀하께서 그에 대한 이의 제기 소송의 승소 가능성은 어려울 것이라 봅니다.

문 배우자 살인에 따른 상속 권리 청구 여부는

〈문〉 요즘 배우자를 살해하는 예가 캘리포니아 주에서 자주 발생하는데 상속관계는 어떻게 되는지요.

〈답〉 캘리포니아 주 유산 상속법 개정안 제250조에 의하면, 살인자는 배우자 살인 행위가 중범에 속하고 의도적인 행위였을 경우 살해된 배우자의 상속인으로서의 자격을 법적으로 박탈당합니다. 이때 사용되는 법적 입증 기준은 형법에 따른 'Beyond reasonable doubt'이 아니라 민사법의 입증 기준인 'Preponderance of the evidence'에 의거

합니다. 따라서, 비록 형사 법원에서 의도적인 중범 살인이라는 최종 판결이 내려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시 민사법원에서 'Preponderance of the evidence'라는 입증 기준에 입각하여 재판 결과가 살인자의 행위가 의도적인 중범 행위라고 판결이 내려질 경우, 살인자는 배우자 상속인의 자격을 박탈당합니다. 이것은 살해된 배우자가 유서를 남겼느냐의 여부에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살인자는 살해된 배우자 몫의 부동산, 동산, 생명 보험 등에 대한 상속권을 상실합니다.

문 자녀 양육권 소송서 자녀를 학대했다고 몰아세우는데

〈문〉 저는 현재 이혼 소송 진행중인 두 자녀의 아버지입니다. 얼마전 아내가 법원에 임시 양육권 및 양육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는데, 제가 아이들을 심하게 때리는 습관이 있다고 거짓 주장을 하여 어이없게 저에게 불리한 명령을 받았습니다. 저는 아이들 없이는 도저히 못 살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답〉 귀하께서는 우선 변호사를 선임하여 빠른 시일 내에 법원이 내린 임시 명령에 대한 재 고려 요청을 신청하셔야 하겠습니다. 자녀 양육권의 문제를 놓고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기 위하여 상

대방 배우자를 자녀 학대자로 법원에 허위 증언을 한 자는 형법에도 저속을 받습니다. 또한 이러한 허위 증언에 근거하여 내려진 가정 법원의 양육권에 관한 명령은 차후에 자녀 학대에 대한 허위 증언을 한 배우자가 형법에 의해 유죄로 선고되었을 경우 자동적으로 법원이 재심사, 고려해야만 합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아내를 상대로 이러한 허위 자녀 학대 행위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발생한 변호사 비용 및 기타 비용을 금전적인 발칙의 형태로 귀하께 지불할 것을 양육권 명령 재 고려 소송에서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상상담」은 독자들이 엮는 페이지입니다. 이민·법률·부동산·세금·노동문제 등에 관해 질문이 있으면 본보 편집국 지상상담자에게 서면질의를 해주십시오. 질문서신에는 낮동안의 전화번호를 적어주시기 바라며, 개별적인 서신회답은 해드리지 않습니다. 편지보 내실 주소: The Korea Times 4525 Wilshire Blvd. LA, CA90010